

의안 번호	1832	【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1. 11. 8.(월)
- 제출 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1. 8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6.(월)

2. 개정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개정 (안 제3조, 제4조)
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산정기준 구체화
 - ※ 해당지역의 월별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구청장이 1.3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를 1.1로 개정
 - 상위법에 폐기물 처리비용 및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정조정위원회 의결 삭제(안 제4조)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 ~ 제11조)
 - 폐촉법 관련 택지개발부담금 사용을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·군 협약서(2012. 11. 15.)에 따라 택지개발부담금 일체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기금으로 입금
 - 제7조 기금의 설치, 제8조 기금의 재원, 제9조 기금의 용도, 제10조 기금의 운용·관리,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 삭제

4. 근거법규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“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”고 규정한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
- 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
안 제3조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5항 [별표5]에 따라 산정하되, 소각시설 설치비 산정 중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변동계수는 1.1로 개정하였음.

안 제4조는 납부계획서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전부 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」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3. 8. 13., 2015. 2. 3., 2020. 6. 9.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 〈신설 2020. 6. 9.〉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 8. 13., 2020. 6. 9.〉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. 〈개정 2013. 8. 13., 2020. 6. 9.〉

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,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20. 6. 9.〉

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⑤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■ [별표 5] 납부금액 산정 기준(제4조제5항 관련)

$$\text{납부금액} = \text{시설 설치비} + 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$$

1.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설치비} = \text{가(소각시설 설치비)} + \text{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)} + \text{다(주민편익시설 설치비)}$$

가. 소각시설 설치비

$$\text{소각시설 설치비} = 1) \times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$$

- 1) : 해당 택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 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배출량(톤)
- 2) : 변동계수(1.3 미만,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함.)
- 3) : 가동률(1.2)
- 4) :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5) :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나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

$$\text{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} = 1) \times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$$

- 1) : 해당 택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배출량
- 2) : 변동계수(1.3 미만,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함.)
- 3) : 가동률(1.2)
- 4) :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(사료화, 퇴비화, 바이오가스화시설 등)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5) :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다. 주민편익시설 설치비

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[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]

비고

- 1. “가동률”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보수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폐기물처리 시설 가동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.
- 2. 해당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납부금액 통보시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설계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“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”, “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”를 각각 적용하지 않고, “톤당 실시설계 단가”를 적용할 수 있다.

3. 나목 중 “폐기물 처리시설 종류(사료화, 퇴비화, 바이오가스화시설 등)”
는 해당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
구청장이 설치·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를 고려하여
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시설
을 말한다.

2.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= \text{가(시설 부지 소요면적)} \times \text{나(부지 매입단가)}$$

가. 시설 부지 소요면적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각각 시설
부지 소요면적을 계산해내 합한다.

1) 시설 부지 소요면적(m²)

$$\text{시설 부지 소요면적(m}^2\text{)} = [\text{가} + \text{나} + \text{다} + \text{라}] \times 100/\text{건폐율(\%)}$$

가) 폐기물처리시설 면적[시설용량(톤/일) × 소요면적(m²·일/톤)]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(m²)

다) 관리동 면적(m²)

라)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(m²)

2) 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

가) 시설부지 면적

구 분		소 요 면 적		비 고
		기본면적	추가면적	
폐기물 처리시설	50톤/일 이하	3,000m ²	-	-
	50톤/일 초과 100톤/일 이하	3,000m ²	20m ² /톤	1기 기준 4,000m ² (1,212평) 이하
	100톤/일 초과 300톤/일 이하	4,000m ² (100톤/일 기준)	25m ² /톤	2기 기준 9,000m ² (2,727평) 이하 1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
	300톤/일 초과 500톤/일 이하	9,000m ² (300톤/일 기준)	5m ² /톤	2기 기준 10,000m ² (3,030평) 이하 3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
	500톤/일 초과	10,000m ² /톤 (500톤/일 기준)	5m ² /톤	2~4기 기준 15,000m ² (4,545평) 이하 5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
관리동	50톤/일 이하	330m ² (100평)	-	작업인원 35명 이상 50명 미만 기준
	50톤/일 초과	500m ² (152평)	-	작업인원 50명 이상 70명 미만 기준
세차동 등 기타시설	50톤/일 이하	330m ² (100평)	-	-
	50톤/일 초과	500m ² (152평)	-	-

비고: 구분란 중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.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은 가) 표에 따른 시설 부지면적(폐기물처리시설, 관리동,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)의 20퍼센트(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)

나. 부지 매입단가

- 1)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(m²)당 조성원가.
- 2)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 계산해서 정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외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단가를 적용한다.